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6,922,562	19,707,677
일반회계		596,263,781	17,887,913
특별회계		60,658,781	1,819,763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공영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수질개선	공기업특별회계	50,978,805	1,529,364
	상수도공기업	25,070,086	752,103
	하수도공기업	25,908,719	777,262
	기타특별회계	9,679,976	290,399
	주택사업	2,775,090	83,2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0,448	6,313
	의료급여기금운영	1,115,425	33,46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96,050	17,882
	공영개발사업	402,403	12,072
	농공지구조성사업	3,473,207	104,196
	기반시설	18,787	564
	장기미집행	504,833	15,145
	수질개선	583,733	17,51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57,45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0회계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 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